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65
----------	------

2018. 2. 2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2월 8일 우창윤 의원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2.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우창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호)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8일 우창윤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시행의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2)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장애인을 포함토록(안 제14조제3항제4호) 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17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안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신설 관련

- 안 제9조의2는 ‘16년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음.
- 다만, 문화본부 산하 디자인정책과가 시행중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프로젝트 사업¹⁾과 시범사업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을 위 사업과 차별화하여 운영할 경우 시범사업의 내용과 방법, 지원대상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 관련

-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붙임 1 참고)을 포함시킴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조례는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붙임 2 참고).

1) 2018년도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사업예산 중 “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프로젝트” 사업비로 7억 6,8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 창의 교육 등 사업으로 구성)

-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장애인위원이 포함되도록 담보할 수 없어 조례개정의 실효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위원의 위촉요건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수정하여 개정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척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근거를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의 참여확대를 도모하며 위원회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65
----------	---------

제안일자 : 2018. 2. 2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요건이 되는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개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4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④ (생략)</p>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① 위원 중 심의·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u>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u></p>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